

자율기구 “주택공급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022.8.16.)(이하 “대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도도입을 위한 후속입법 및 주택공급관리 등 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주택공급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공급기획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쏠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주택공급기획과”는 주택토지실장 밑에 두며, 대책에 따른 후속입법 및 주택공급 관리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③ 주택정책관은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주택토지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공급기획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 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주택공급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책 물량(270만호)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대책 후속입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및 공급TF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책 후속조치 중 공급촉진지역에 관한 사항
5. 대책 후속조치 중 타부처 제도개선 사항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주택공급기획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주택공급기획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공급기획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2년 9월 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3년 3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택공급기획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4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4급 또는 5급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5급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6급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